

(4) 提出書類

早期審査에 關한 提出書類(「早期審査에 關한 事情說明書」)는 早期審査對象이 되는 出願마다 1通을 提出한다. (事情說明書의 作成要領은 II-3 參照)

當該書類는 特許廳에 受理된 後는 返還되지 않는다.

3. 事情說明書의 作成要領

(1) 樣 式

早期審査에 關한 事情說明書	
昭和 年 月 日	
特許廳長官 殿	
1. 事件의 表示	
昭和 年 意匠登録願第 號	
2. 意匠關係 物品	
3. 提出者(出願人)	
住所(居所)	
氏名(名稱)	印
4. 代理人	
住所(居所)	
氏名(名稱)	印
5. 實施狀況說明	
(1) 實施行爲의 特定	
(2) 意匠의 實施時期	
(3) 意匠을 實施한 資料 또는 物件	
6. 緊急性을 要하는 狀況의 說明	
7. 先行意匠調査	
8. 自己의 意匠登録出願中의 意匠의 開示	
9. 添付書類 또는 添付物件의 目錄	

(2) 書誌的事項(1~4項)은 다음 要領으로 記載한다.

① 「事件의 表示」의 欄에는 「昭和〇〇年 意匠登録願第〇〇〇號」와 같이 意匠登録番號를 記載함.

② 「意匠關係物品」의 欄에는 意匠登録願의 意匠에 關係되는 物品을 記載함.

③ 「提出者」 또는 「代理人」의 住所 다음에는 電話番號를 記載할 것

④ 其他는 意匠法施行規則第11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特許法施行規則樣式第1(第8條關係)의 備考1~3, 4의 但書 6, 7, 10 및 12~14와 같으며 提出年月日은 特許廳接受窓口에 提出하는 日字 또는 郵遞局投函日字를 記載함.

(3) 實施狀況說明은 다음 要領으로 記載함.

① 實施行爲의 特定

出願人自身 또는 出願人으로부터 그 出願意匠에 대

한 實施許諾을 받은 者(Licensee)의 日本國內에서의 行爲가 當該意匠에 關係되는 物品의 製造, 使用, 讓渡, 貸與, 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展示 또는 輸入行爲中 어느것에 該當된다는 것을 特定해서 記載한다.

② 意匠의 實施時期

實施行爲가 언제부터 施行되고 있는가를 記載함. 例를 들면 實施行爲가 製造의 경우 「昭和〇〇年〇〇月〇〇日부터 製造中」과 같이 記載함.

③ 意匠을 實施한 資料 또는 物件의 提出

意匠을 實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製品카타로그, 新聞, 雜誌, 圖書等의 資料(Copy도 可함) 또는 製品等의 物件(寫眞도 可함)을 提出함.

(4) 緊急性을 要하는 狀況의 說明은 第三者가 許諾 없이 意匠을 實施하고 있던가 또는 實施할 準備를相當한 程度 進行하고 있음이 明白하므로 緊急한 權利化가 要求되고 있는 狀況을 說明한다. 이리한 경우 原則적으로 ①第三者, ②第三者의 實施關聯行爲, ③第三者의 實施關聯行爲의 開始時期 ④第三者의 實施關聯行爲를 나타내는 客觀性있는 資料 또는 物件을 明白히 해야 한다. 또, 그 狀況을 明白히 하기 위한 必要事項이企業秘密에 屬하여 提出書類에 記載함으로써 商去來上支障이 있다고 생각 될때는 聽取(Hearing)等으로 白히 하겠다는 취지를 表示하고 當該事項의 記載를 省略할 수 있다. 그 聽取內容等에 對해서는 公開하지 않는다.

(5) 先行意匠調查는 早期審査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記載를 要請하고 있으며 그 調査는 다음 要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① 調査對象資料

(i) 調査對象資料는 적어도 日本國登録意匠公報로 한다.

(ii) 그 出願意匠이 別表에 揭記한 物品에 關係되는 것일 때는 社團法人 日本디자인 保護機關聯合會 및 그 協力機關으로서 物品別로 定해진 取扱機關(別表)이 行한 先行意匠調查結果를 첨부할 것을 要請한다.

② 調査範圍

(i) 先行意匠調查의 調査分類範圍는 그 出願意匠에 關係되는 物品이 屬하는 「意匠分類」의 小分類(施行規則別表第一의 物品區分欄의 水準)로 한다.

(ii) 調査年度의 範圍는 出願日前 15年으로 한다.

③ 調査結果

(i) 先行意匠資料를 첨부한다.

(ii) 先行意匠資料가 欠을 경우는 그 出願意匠의 背景이 되는 一般的의 意匠水準을 나타내는 意匠資料를

첨부한다.

(iii) 別表에掲記한 物品에 대해서는 調査를 行한
取扱機關의 名稱을 記載한다.

(6) 自己의 意匠登録出願中의 意匠의 開示

「早期審査에 關한 事情說明書」의 提出에 있어서 「先行意匠調査」에 追加하여 類似意匠의 登錄要件(意匠法第10條) 調査를 效率的으로 하기 為하여 「自己의 意匠登録出願中의 意匠의 開示」를 要請하여 다음 要領으로 記載한다.

① 開示의 範圍는 그 出願意匠에 關係되는 物品에 屬하는 「意匠分類表」의 小分類(施行規則別表第一의 物品의 區分欄水準)의 範圍에서 그 出願과 同日字 또는 그 以前에 出願한 自己의 다른 意匠登録出願(最終處分이 確定되어 있지 않은 것) 中에서 早期審査申請을 하는 出願에 대한 類似意匠登錄要件(意匠法第10條) 判斷에 關聯성이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② 開示는 「昭和〇〇年意匠登録願第〇〇〇號」와 같
이 意匠登録出願番號를 記載함에 따라 行한다.

(註) 그 出願이 獨立意匠登録願의 경우도 開示한다.

4. 其他

出願人(代理人)으로부터의 早期審査에 關한 問疑에 대해서는 電話로 回答한다.

問疑窓口：特許廳審査一部意匠課

(別表) 追加의으로 行한 意匠登録出願에 關한 事情說明書

物品 및 行先意匠調査實施機關

對象 物品名	取扱機關
時計, 照明器具	(社) 日本디자인 保護 機關聯合會
映寫機, 攝影機, 露出計, 寫真 機, 카메라렌즈, 태이프레코더	(財) 日本機械 디자인 센타
타일, 食卓, 주방用品(도자기 製品)	(財) 日本陶磁器意匠 센타
의자(金屬製), 낚시용릴, 食 卓, 주방용품(但, 도자기제품 除外), 라이타	(財) 生活用品振興센 타
의자(但, 金屬製除外), 家具用손잡이, 家具用裝飾金 屬, 태이불, 쳉상, 책장, 장 식장, 찬장, 家具用 경첩	(社) 日本家具디자인 센타

III. 早期審理에 대하여

1. 早期審理

早期審理에 關한 諸節次는 거의 早期審査節次에 準하고 있으므로 特히 相異한 部分에 대해서만 說明하겠다.

(1) 早期審理의 對象이 되는 審判事件

다음 要件을 갖춘 意匠登録出願에 關係되는 審判事件은 早期審理의 對象으로 될 수 있다.

① 「審判請求人自身 또는 審判請求人으로부터 그 出
願意匠에 대하여 實施許諾을 받은者(Licensee)가 實施
하고 있는 當該意匠審判事件으로 權利化에 대한 緊急性
을 要하는 것」일 것. 여기서 「權利化에 대한 緊急性
을 要하는 것」이란 緊急한 權利化가 要求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第三者가 許諾敘이 그 意匠을 實施하고 있
는 것」 또는 實施基準을相當한 程度로 進行하고 있음이
明白한 것」을 말한다.

② 審判合議體에 依한 審理가 아직 開始되지 않았을
것.

③ 拒絕査定不服審判일 것

(2) 早期審理節次

①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가 提出되어진 審
判事件에 關한 早期審理對象與否는 部門長審判長이 選
定하여 그 結果에 대한 書面通知는 하지 아니한다.

② 選定結果 早期審理對象으로 된 審判事件에 대해서는
擔當合議體가 신속히 審理를 開始하고 지체 없이 處
分終了되도록 審理節次를 進行한다.

③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의 記載內容中 「實
施狀況說明」, 「緊急性을 要하는 狀況說明」欄의 記載內
容에 대해서는 必要에 따라 聽取(Hearing)에 依한 確
認 및 現地確認을 行할 수 있다.

(3) 提出書類의 閱覽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는 意匠登録에 關한
審判記錄의 閱覽節次와 같은 節次로 閱覽이 可能하다.

2. 提出節次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의 提出—

(1) 提出者

當該審判事件의 審判請求人으로 한다.

(2) 書類의 提出

直接特許廳接受窓口(特許廳審判部書記課)에 提出하
거나, 봉투에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在中」이라

表示해서 特許廳長앞으로 郵送할 수 있다.

(3) 提出時期 및 手數料

審判請求日以後는 언제라도 提出할 수 있으며 手數料는 必要치 않다.

(4) 提出書類

早期審查에 關한 提出書類(「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는 早期審理對象이 되는 審判事件마다 1通을 提出한다.

(事情說明書作成要領은 Ⅲ-3 參照)

當該書類는 特許廳에 受理된 後는 返還되지 않는다.

3. 事情說明書의 作成要領

(1) 様 式

早期審理에 關한 事情說明書

昭和 年 月 日

特許廳長官 殿

1. 事件의 表示

昭和 年審判第 號
(昭和 年意匠登錄願第 號)

2. 意匠關係 物品

3. 提出者(審判請求人)
住所(居所)

氏名(名稱)

印

4. 代理人

住所(居所)

氏名(名稱)

印

5. 實施狀況說明

(1) 實施行爲의 特定

(2) 意匠의 實施時期

(3) 意匠을 實施한 資料 또는 物件

6. 緊急性을 要하는 狀況 說明

7. 拒絕理由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主張

8. 添付書類 또는 添付物件의 目錄

(위 5 및 6項에 대해서는 그 後의 狀況에 變更이 없으면 早期審查에 關한 事情說明書를 採用할 수 있다)

(2) 書誌的事項(1~4項) 및 5, 6項은 早期審查의 경 우와 같은 要領으로 記載함.

(3) 「拒絕理由에 該當되지 않는다는 主張」의 欄에는 拒絕理由에 該當되지 않는 根據를 先行意匠과의 關係를 土臺로 具體的으로 主張해야 한다.

4. 其 他

審判請求人(代理人)으로부터의 早期審理에 關한 問疑에 대해서는 電話로 回答한다.

問疑窗口 : 特許廳審判部書記課. <8>

한국 발명 특허 협회 신간 안내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발명의 발상기법 중심—

규격 : 국판 240면

가격 : 3,000원

—발명의 발상기법 총망라—

발명인의 길

규격 : 국판 200면

가격 : 2,000원

—발명 특허 실시 가이드—

발명인의 세계

규격 : 국판 200면

가격 : 2,500원

판매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 (전화 : 568-8263)

發 刊 案 內

海外 特許情報

一季 刊—

本會는 年 4回 季刊으로 海外特許情 報를 發刊하고 있습니다.

4·6倍版 200面내외로 發刊되는 이 刊 行物에는 海外 特許制度를 비롯하여 각 종 特許情報가 실려있습니다.

會員社에는 無料配布되고 있습니다.
 많은 愛讀바랍니다. <編輯者 訂>

新 刊 案 內

特許專擔部署 業務指針書

저 자 : 金允培 변리사

규 격 : 국판 320면

가 격 : 10,000원

工業所有權 지식

저 자 : 鄭泰連 변리사

규 격 : 4×6판 · 264면

가 격 : 2,3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자료판매센터